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·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환경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“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정비 권고” 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·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변경(안 제2조제1호)
  - 신체장애자용 → 신체장애인용
- 법제처 발간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전문 정비
  -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 →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7조(안 제1조)
  - 도로법에 의한 →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(안 제2조제2호)
  - 영등포구 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안 제3조)

- 구민 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안 제6조제1항)
- 항 삭제(안 제6조제4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,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임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·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256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정비(안 제2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1) 「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2)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7.13. ~ 8.2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·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신체장애자용”을 “신체장애인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도로법에 의한”을 “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 집·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7조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“보도”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)·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)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.<br>2. “이면도로”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(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·일반국도·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)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.<br>3. 4. (생략)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신체장애자용 -----<br>-----.<br>2. -----<br>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<br>3. 4. 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내 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적용대상) 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물、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  
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 
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제6조(청결유지 노력) ① 구민은 쾌  
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  
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 
야 하며,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  
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  
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  
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、③ (생 략)

④ 제3항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영  
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5조를  
준용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

--.

제6조(청결유지 노력) ① 서울특별시  
영등포구민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、③ (현행과 같음)

④ <삭제>